

시설물사용에 관한 규정

제 정	1996.	3.
개 정	1999.	9.
개 정	2007.	11.
개 정	2013.	1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용대상) 각종 시설물은 본 대학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학생수업, 실습 및 연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이 허가된다. 외부단체의 사용은 매 학기도중 평일은 불허하며 다만, 토요일, 일요일, 및 공휴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제3조 (적용범위) ①이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.

1. 강의실 및 세미나실
2. 우송체육센터 및 부대시설
3. 체육장(운동장 및 농구장)

②실험실습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이용등은 실험실습시설외부이용규정에 따른다.

제4조 (우송체육센터운영) 우송체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 (관리) 본 대학 시설물 사용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 관리과(2013.1.1.)에서 관장한다.

제6조 (신청 및 승인) 학생, 교직원, 또는 외부단체에서 본 대학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한 행사명, 행사기간 및 대상인원을 명시한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한다.

제7조 (사용준수) 본 대학 시설물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사용 승인 목적 이외 사용금지
2.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
3. 질서유지
4. 기타 본 대학에서 지시하는 사항

제8조 (사용제한)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.

1. 교육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
2.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,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
3.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닐 때

제9조 (조기사용) 인근지역 주민으로서 주민 건강을 위하여 이른 아침 본 대학 우송체육센터(06:00 ~ 08:00)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.

제10조 (사용료) 시설물의 사용자가 본 대학 학생이거나 교직원일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, 다만, 외부단체 일때에는 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 (변상)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중 이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전액을 배상책임 지어야 한다.

제12조 (기타)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이를 시

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. 3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. 3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. 11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